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15.10.15.>

정신요양시설 ([]폐지 []휴지 []재개)신고서

※해당되는 []에 √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.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								5일
	법인명		성명(대표자)		전화	<u></u> 번호		
신고인	소재지							
	시설:	의 명칭	시설장 성명		명	전화	 번호	
시설 개요	소재지							
711-11	(폐지·휴지·재개)연월일				휴지기간			
	귀가				취업			
입소자 조 치 계 획	전원				위탁			
	기타							
재산활용계획 (별첨 증명서류 참조)								
사 유								
「정신보건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([]폐지, []휴지, []재개)를 신고합니다.								
							년	월 일
신고인:								(서명 또는 인)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			
첨부서	1. 해당 시설의 폐지·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1부 2.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.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.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증 1부							수수료 없음
								1